

『노은 법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에 따라 『노은 법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충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가. 용역명 : 노은 법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나. 시행기관 : 충주시청
-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라. 용역비 : 금433,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계속비사업(기 확보액/‘26년까지 50,000천원, ‘26년이후 383,400천원)
- 마.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
※ 본 용역의 PS 항목은 사후 정산 대상으로서, 준공 시 실제 지출된 증빙서류에 따라 검토하여 실비로 정산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제출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4.(금) 10:00 ~ 2026. 7. 29.(수) 10:00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7. 28.(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추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7. 29.(수) 11:00

아. 개찰장소 : 충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자.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낙찰하한선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나. 엔지니어링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다. 측량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지질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토질·지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참여 지분이 높은 업체이어야 함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3-나. 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만 참여가 가능

다. 입찰참가자격 3-다, 라. 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분담이행 업체도 지역업체참여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 업종별 분담비율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부문
100%	72.3%	18.1%	9.6%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 분담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정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으로 효율적이고 최대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 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다.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충주시청 하천과 하천시설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제5절(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시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용역비 5억미만으로 생략합니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에 따른 배점 3점은

배점한도 부여)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입찰공고(세부평가기준 포함)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청 하천과 하천시설팀(043-850-3786)**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0층 하천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라.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참 업무중복도 홈페이지 등 공개자료(한글파일, USB 등),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엑셀파일, USB 등), 자기평가서 2부(점수 산출근거 포함)

7.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등록의 경우 참여업체(대표업체, 공동수급업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마. 평가결과는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충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바.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충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 043) 850-5628), 용역에 관해서는 하천과(☎ 043) 850-3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